

2026년 국방AI인재양성사업(군·산·학 협력센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실무능력을 겸비한 국방분야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방부에서 '26년 신규 조성을 추진 중인 국방 AX 거점 內 설치될 '군·산·학 협력센터'의 구축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대학 등)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1일

국방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1 사업 목적

- 민간 우수 산·학 역량 및 군 AI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민·군 협력 AI R&D 과제 기획 및 수행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군 AI 전문인재 양성 도모
- * 국정과제 (109)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등 연계 추진

2 추진배경

- 생성형 AI(추론·예측)가 주도한 AX 1.0을 넘어, 이제는 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추며 새로운 생산성 혁명이 시작되는 AI Transformation 2.0 시대 개막
- 글로벌 주요국은 국방 AI 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AI 센터, 국방연구기관 등 다각적인 기관 설립을 통해 AI 인력양성 집중
- * 미국 CDAO, AI2C, 영국 DAIC, DSTL, 이스라엘 Unit 8200 등 설립 및 운영
- 그간 우리 군은 다양한 AI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 AI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 중에 있으나,
- * AI·SW 소양교육, AI 교육·연구센터 구축, 군 특화 AI 전문교육 등

-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전문인력의 이탈 심화 등 제반 환경변화로 인해 자체적인 군 AI 전문인재 양성 기반 강화가 절실
- 민간 우수 AI 기술을 활용하여 민·군 AI 생태계를 조성 및 군에 효율적 적용가능한 군·산·학 협력 기술개발 및 AI 전문인력 양성 필요

3 관련 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국방부고시 제3080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정통부고시 제2025-9호)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관련 지침(과기정통부고시 제2025-22호)
-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R&D 사업관리를 위한 과기정통부 고시 등을 준용

4 지원 사항

지원대상 : 대학, 기업, 비영리기관 등 국내 AI 교육, 연구기관

* 신청 세부 요건은 공고문 상세 내용(9페이지) 참고

지원예산/선정규모 : 총 90억원 / 5개 주관연구개발기관

(단위 : 억원)

과제명	지역 (주요 기술)	군	'26년 예산	선정 규모
군·산·학 협력센터	서울(용산) (합동지휘통제체계 등)	합참	18	1개 (주관) 연구개발기관
	서울(양재) (공군 소요 AX 기술 등)	공군	18	1개 (주관) 연구개발기관
	경기(판교) (육군 소요 AX 기술 등)	육군	18	1개 (주관) 연구개발기관
	대전 (육군 군수 기술 등)	육군	18	1개 (주관) 연구개발기관
	경상(부산) (해양 AX 기술 등)	해군·해병대	18	1개 (주관) 연구개발기관

* 각 지역별 인프라 및 사무공간 구축은 별도 과제로 추진

□ **지원기간/공모방식** : 총 5년('26 ~ '30년, 1+2+2년) / 자유 공모

* 총 5년 협약·지원하되, 단계평가(1년차 등)를 통해 연구개발 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증액 등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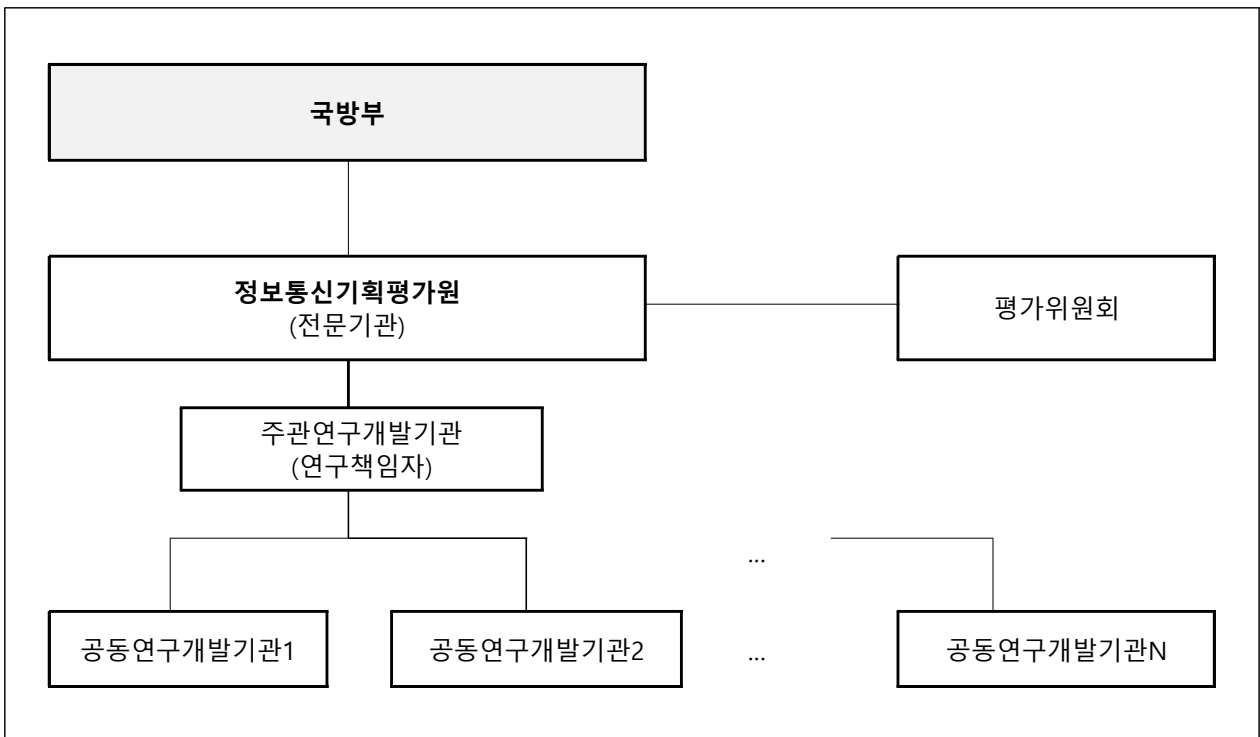
□ **지원내용** : 군·산·학 협력센터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 민·군 공동 기술개발과 교육 연계를 강화하여 국방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첨단 AI 기술개발 및 실증환경 구축 지원
- 문제해결 중심 학습체계를 도입하여 장병 주도 실전형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방 협력 거버넌스 체계 운영 지원

☞ 세부 기술개발 내용 및 교육과정 등은 향후 국방부 및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예산)는 '26년도만 확정되었으며, '27년 이후에는 정부 예산 상황 및 국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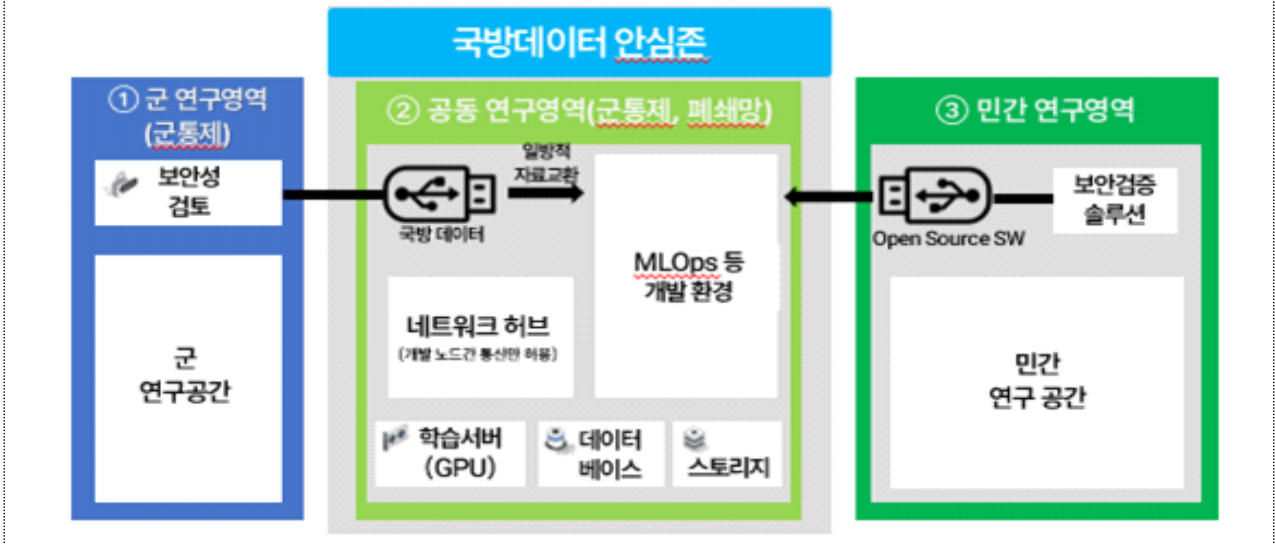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지역 거점별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및 운영

- (구축) AI기술개발 인프라, 실증환경, 데이터 안심존 등 군·산·학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권역별* 협력센터 구축 및 운영
 - * 서울(용산, 강남), 경기(판교), 충청(대전), 경상(부산) 등 5개소 구축
- 주관연구개발기관(대학(원)), 기업, 군 등이 공동으로 국방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안 환경 및 AI 인프라를 갖춘 연구개발 센터 구축/운영
 - * GPU서버 구축, 데이터 수집, 모델 배포·운영 등 전 주기 지원 연구환경 제공
- 실험단계에서 개발된 AI 모델에 대한 국방데이터 기반 대규모 학습 및 튜닝, 성능 개선을 위한 MLSecOps 기반의 AI 플랫폼 지원
 - * MLSecOps : 머신러닝 모델의 개발, 배포, 운영, 모니터링, 재학습 등 전체 수명 주기를 최적화하는 MLOps에 보안 절차를 강화한 플랫폼
- (실증환경) 센터에서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증 및 실험 환경 구축·운영 등 추진
 - 실증환경을 통해 부대별 특이사항 도출 및 문제해결 특화 AI 개발 지원
 - * 개발을 위한 GPU 환경, 보안 네트워크 등 현장 상황에 맞는 실증환경 구축
- (국방데이터 안심존) 국방 AI 프로젝트 수행 및 교육을 위한 양질의 다양한 분야 데이터 셋 생성 등 국방데이터 안심존 구축·운영
- (보안성 검토 지원) 프로젝트 결과물을 실제 국방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취약점 점검 등 보안성 검토절차 수행 간 기술지원
 - * 산출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적(코딩 규칙 검증, 취약점 점검 등) 및 동적(하드웨어 내 SW 코드 실행률 점검) 시험 등 평가 지원
- (생태계 지원) 지역거점이 소재한 지자체 및 지역 기업(스타트업 및 중소벤처 등)과의 협업을 통해 최신 AI 기술의 군 적용 소요 및 우수 AI 기업 발굴, K-방산 생태계 활성화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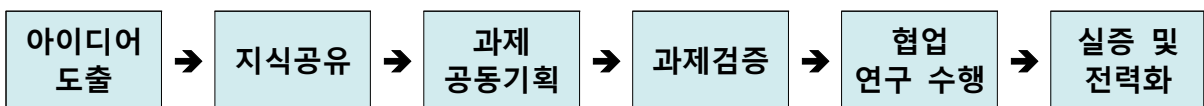
< 군·산·학 협력센터 구성도 >



* 서울시청, 경기도청, 부산시청 등 업무 협력(MOU 등) 추진

민(산·학)·군 협력 기반 국방 AI 분야 기술개발 지원체계 구축

- (신규 기술·소요 발굴) 민간과의 AI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식별한 AI 기술을 바탕으로 적용가능한 신규 기술·소요 발굴 및 기획 추진
- (기술개발) 각 군에서 필요한 AI 기술 수요를 기반으로 대학, 기업, 군 등에서 중·단기 PBL을 추진하는 민(산·학)·군 협력 추진



- 다수의 소규모 교육·연구그룹(Primary Research Group)*을 중심으로 상호 작용하는 수평구조로 운용(교수 3명, 석박사 15명 내외, 군 AI 담당자, 기업전문가 등)
- (연계) 지역거점 대학(기업 포함), 지자체 및 산하기관, 지역소재 기업과 각 군 AI 조직* 간 연계를 통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 *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인공지능센터 등), 해군(미래혁신단, 지능정보체계단 등), 공군(AI신기술융합센터, 지능정보체계단 등), 해병대(첨단기술연구센터 등)
- 국방 AX 거점을 운영하는 각 군 AI 인력 및 군 AI 교육생 등 군 장병이 센터에 상주하는 민·군 협력 조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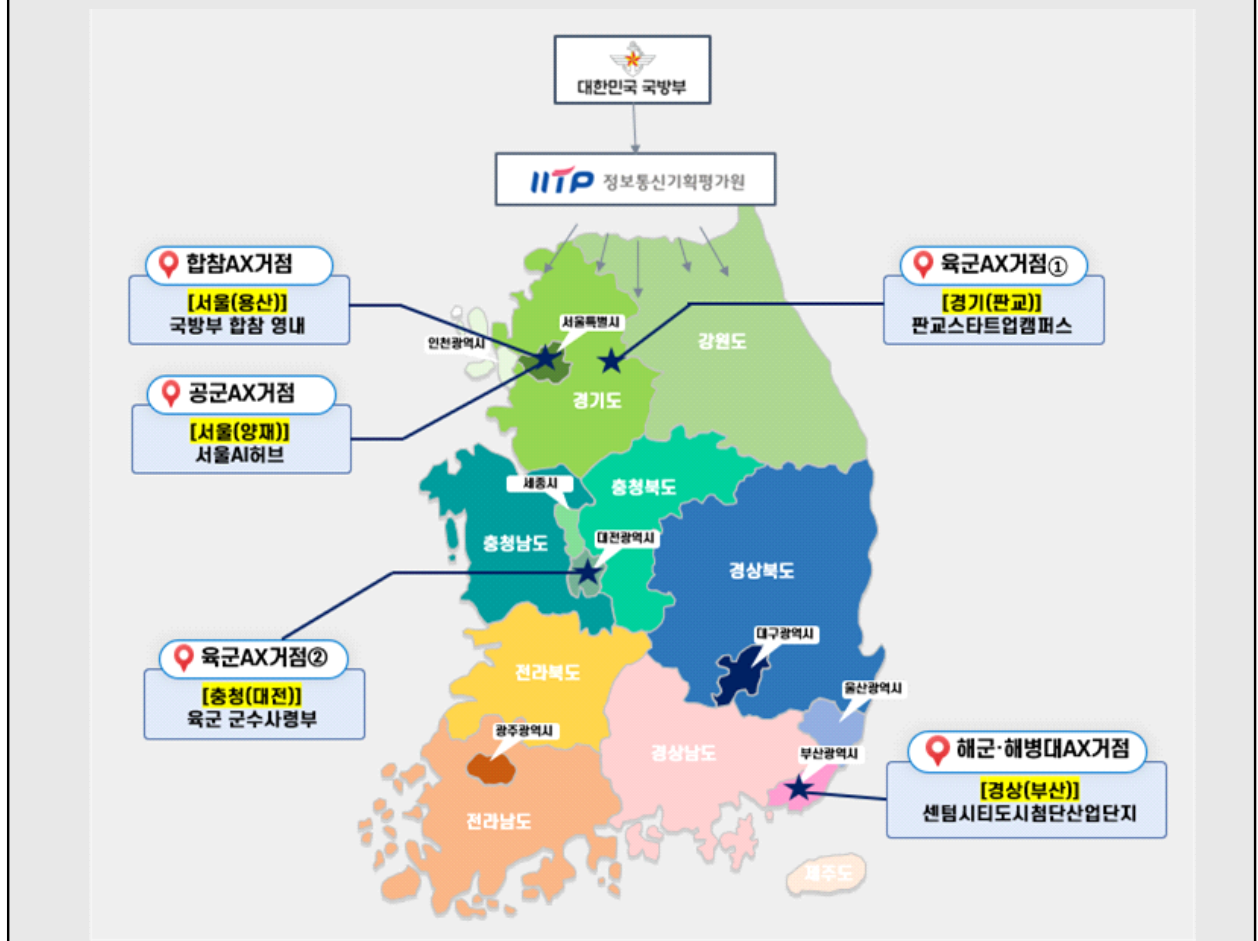
국방 AI 전문인력 양성

- (교육) 군별 소요 기반 문제해결 학습방식(PBL, Project Based Learning)을 활용한 군별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 육군 컴퓨터 비전, 해군 신호처리, 공군 군집 비행 등 군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도입
 - 군 작전 및 실무와 연계된 단기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실제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지원하는 융합형 PBL 강화학습 추진
 - * 교육대상 : 실무능력 함양이 요구되는 군별 AI 전문인력 등
 - * 교육목표 : 국방데이터 분석, 국방 AI 적용 및 활용체계 기획·개발 등 실무역량 함양
- (타 프로그램 연계) AI 소양교육 및 전문교육, AI 경진대회를 통해 함양한 이론적 기반에 실무능력까지 겸비한 전사적 교육주기 완성
- (기타) 지역별 소규모 AI 교육센터 지원, AI 개발 관련 프로그램(파이썬, RUST 등), 생성형 AI, AI 개발사례 등 장병 대상 교육(10회 이상/년) 추진
 - * RUST는 안전, 속도 및 동시성을 보장하는 언어로 C/C++의 대체제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 국방부 산하 DARPA에서 C언어를 RUST로 자동 변환하는 프로젝트 추진 중
 - * SW마이스터고, AI중심대학 등 학생 대상 국방데이터 기반 교육 및 실습 지원

국방 AI 거버넌스 구축 및 컨설팅 수행

- 군·산·학·연 협업체제로 지상, 해양, 공중, 우주, 사이버 등을 포함한 다차원 공통기반 국방 AI 거버넌스 구축
 - 국방 AI 협의체, 위원회 등 운영을 통해 AI R&D 기획, 과제 선정, 데이터 활용, 산출물의 전략화 가능성 평가, 피드백 등 추진
 - * 국방 AI 관련 기관, AI 대학원, 국방 대학ICT연구센터, 국방 관련 연구기관, 기 구축된 국방 AI 교육·연구센터 등과 연계 및 협력 추진
- 각 군에 필요한 AI 전략 로드맵, 맞춤형 기술 솔루션, 위험 관리 및 보안, 지식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 컨설팅 지원
-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AI 연구, 연구 성과물(기획보고서, 논문, 개발 코드, 시제품 등)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추진

군·산·학 협력센터(국방AX 거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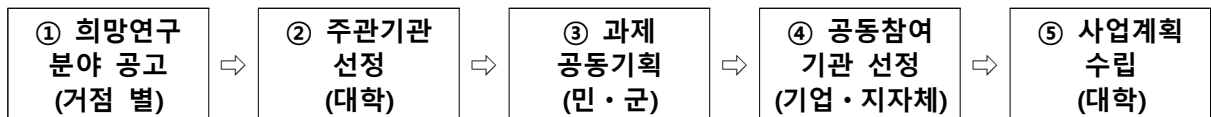


구분	지역	기본개념
① 합참AX거점 (JADC2 특화)	서울 (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시설(용산) 內 설치, 비밀 데이터 기반 JADC2 공동개발 및 실증 특화
② 육군AX거점①	경기 (판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유수의 민간AI 업체들이 집중된 판교에 설치 육군의 다양한 AX 소요 실증 특화
③ 육군AX거점② (군수특화)	충청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군 군수사, ADD, 기품원(신뢰성연구센터) 등이 위치한 대전에 설치 군수분야 AX에 특화
④ 해군·해병대 AX거점	경상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K-해양 AI 벨트 조성' 연계, 부산시와 협력하여 부산에 설치 해양 AX 특화
⑤ 공군AX거점	서울 (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및 서울AI허브와 연계 '공군 AI신기술융합센터' 확대개편 <p>* 기존 시설 복구 및 이전 지원 추진(비용 지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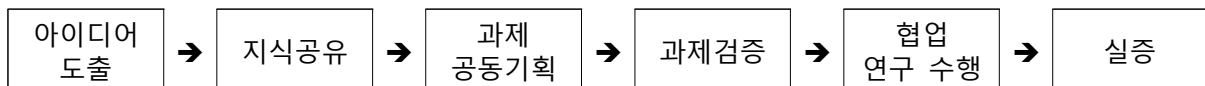
• 군별 희망 연구분야

구 분	희망 연구분야
합 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참 쏠 기능의 JADC2 구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 R&D 예) AI 업무자동화(예측, 분류, 업무최적화 등) • KCCS 공동개발 및 관련 기술(LLM 핵심기술과제 등) 실증 예) KCCS 1.0(생성형 AI 구현 기술), KCCS 2.0(분석형 AI 구현 기술)
육 군 (판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전장인식/판단 - 지능형 전장상황 분석·판단 예) 피지컬 AI 기술 개발, LLM/VLM 고도화 등 • 지능형 전장인식/판단 - 자동 위협표적 탐지/추적/식별 예) 신뢰성 있는 모델 구현(적대적 공격에 강인한 모델) 등 • 지능형 통합 지휘결심 - 아군 방책 수립 예) 작전수행 과정 지원, 모델 경량화 등
육 군 (대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전장인식/판단 - 지능형 전장상황 분석·판단 예) 에이전트 AI 기술 개발, LLM/sLLM 고도화 등 • 지능형 전장인식/판단 - 센서 데이터 품질 개선 예) 합성데이터 품질 고도화, 데이터 품질 보증 기술 등 • 스마트 전략지원 - 지능형 군수지원 예) 학습기반 군수 최적화, 지능형 군수시스템 관리 등
해군· 해병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자동 위협표적 탐지/추적 및 식별 기능 • AI 전투참모 구현을 위한 지능형 전장상황 분석·판단 • 병력절감 효과 창출을 위한 국방 분야 AI 신기술
공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톨로지 기반 해병대 임무수행 LLM 및 플랫폼 개발 • 서북도서 경계작전용 AI 고도화 • 드론 On-Device 컴퓨터 비전 모델 개발 및 경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공군 생성형 AI 서비스 고도화 예) AI Agent, 멀티모델, MCP, AI 보안 등 • AI 파일럿(PILOT) 기술연구 개발 예) 자율비행, 표적식별, 협업 기술 등 • AI 기반 사이버위협 관제 및 악성코드 분석 기술

• 주관(참여)기관 선정 및 사업수행 절차



• 과제 공동 기획 절차



□ 신청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대학(원)만 지원 가능하며, 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에 맞는 지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기업, 협회, 연구소 등 국내 AI 연구 및 교육 관련기관(컨소시엄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평생교육시설, 정부 출연 연구소 및 협회, 공공기관, 민간 연구소 등
 - 외국 기관(외국기업·대학·연구소·협회 등) 및 외국계 국내 법인 참여 제외
 - * 국내 법령에 따라 설립·등록되고 국내에 소재한 기관만 참여가능하며, 국내 소재 외국 기관 및 해외 소재 국내기관은 모두 참여 대상에서 제외함
 - *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신청 시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만 컨소시엄 가능
 - * 그 외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협약 완료 후, 군 소요과제 기반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추후 선정(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연구개발기관 추가(협약변경) 추진

□ 참여 조건

구분		참여 요구사항(필수)
기술 개발	국방 신기술 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AI 분야 신기술 개발(1건 이상/년) 추진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국방 분야 AI 신기술 개발 추진(군 협의 추진) - 기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추진
	군 소요기술 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AI 분야 군 소요기술 개발(2건 이상/년) 추진 - 군에서 원하는 국방 AI 소요 기술개발 추진(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 추진)
	데이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데이터 안심존 운영 - 민군 공동으로 국방 AI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국방데이터 구축 - 군 소요 원천 데이터 수집 및 라벨링 등 데이터 전처리를 통한 학습데이터 구축 - 국방데이터 활용 절차 수립 및 운영
	연구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 구성 - 교수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의 AI·SW 분야 전문 교수(AI·SW 분야 우수 석학 중심) 3인 이상, 산학협력교수 및 석(박)사 과정 연구원 15명 이상 확보 • 기업 등의 경우 : AI·SW 분야 전문 연구진(현업 종사자 중심) 8명 이상 확보 - 국방 관련 : 국방 AI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수 및 강사, 자문단 등 확보 * 軍 및 국방 관련 교육기관, 연구소, 기업 등에 속한 현업 종사자 중심
	실증환경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환경 운영 관리 - GPU, 스토리지, 네트워크, MLOps 등 HW/SW 환경 운영 관리 ▪ 산출물 보안 절차 지원 - 산출물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토 등 보안인증 획득 지원 및 군내 적시 전략화 추진

교육 운영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L 기반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 교육 목적(인재상) 및 기간에 적합한 교육과정 성과 목표 및 운영계획 수립 * 교육생은 군에서 파견 등으로 협력센터에 상주하는 인원을 포함함
	효과측정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효과 측정(평가)계획 수립 - 사전·사후 역량평가 실시 등 교육효과 측정(평가) 계획 수립 - 교육효과 측정(평가) 결과 전문기관에게 보고
	커리큘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AI 소요기술 개발 특화 PBL 형태의 교육과정 개발 - 교육 목적 및 기간(최소 6개월)에 적합한 효과적인 커리큘럼 개발 - 국방 관련 사례 및 실무 내용이 반영된 교육과정 개발 * 선정기관은 교육 실시 전까지 국방부 및 전문기관과 커리큘럼 보완 및 확정을 위한 협의 필요 * 커리큘럼은 이론과 실습(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율 제시)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軍 특화 교육 내용 포함
	실습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별 특화된 국방 AI 실습 교육 구성 및 운영 ▪ SW마이스터고, AI중심대학 등 학생 대상 국방데이터 기반 교육 및 실습 지원
	세미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및 AI 인식 제고를 위한 장병 대상 세미나 개최 추진 ▪ AI 신기술, 군 적용 AI 기술개발 사례 등 교육 추진
	교육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업, 국방 관련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한 국내 현장학습 및 세미나 운영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소요기획, AI 기술로드맵, 보안, 기술 이전 등 전문 컨설팅 지원(연 10회 이상)
협력 센터 운영 · 관리	협력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보된 각 지역별 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 군 연구영역, 군 특화 개발영역, 민간 연구영역, 세미나실 등 공간 관리 (임대료, 관리비, 망회선비, 기타 센터 운영비용 등 집행 처리) - 군 파견 인력 정주여건 지원(필요시) - CCTV, 출입보안 장치 등 운영 - 기술개발 및 교육을 위해 상시 이용 가능 하도록 공간 개방 운영 ▪ 협력센터 상주인원은 연구진(대학, 기업 등)으로 구성하며 3인 이상 필수 (군과 기술기획·개발, 교육 등 지속적인 협업 추진)
	성과관리 및 행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커리큘럼 구성, 교수(강사)진, 멘토링, 정주여건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교육생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 방안 수립(출결 관리, 학습 독려 등) ▪ 국방 AI 교육내용 및 관련 산출물에 대한 관리 - 교재, 교안, 보고서 및 AI 실습 프로젝트 결과물 등 교육 관련 산출물은 전문기관에게 제출 및 보고
	멘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별 대학, 산업체 등 멘토 1명 이상 확보
	방산 생태계 확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X 거점별 협의체 및 공동 이벤트 참여 및 지원 ▪ 방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 및 방산기업 상생협력 지원
	운영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사업단) 구성·운영 ▪ 교육생 행정지원, 사업성과 관리 등을 위한 전담 직원 배정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물, 데이터, 시스템, 인원 등 보안등급에 맞추어 관리 - 비밀문서, 군사자료 등 데이터를 보안 등급에 맞춘 시설, 인원 등 보안 관리 ▪ 국방 보안 업무 훈령에 따라,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한 협조 필수
	지적 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물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1항, 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소유이나, 실증 결과물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3항, 국방 정보화 업무 훈령 제96조의4, 제99조에 따라 국가 소유로 귀속 예정 단, 사용권 등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협약 이후 협의
성과 지표	공통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소요 기술개발(2건 이상) 및 국방 AI 신기술 개발(1건 이상) ▪ 군 장병 AI 신기술, AI 기술개발 사례 등 외부 인원 대상 교육 추진(10회 이상/년) ▪ 교육생 만족도 80% 이상
	자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특허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자율 성과지표 2개 이상 설정

* 지역별 협력센터 공간 및 GPU 서버 등 인프라 구축은 별도 지정 기관이 담당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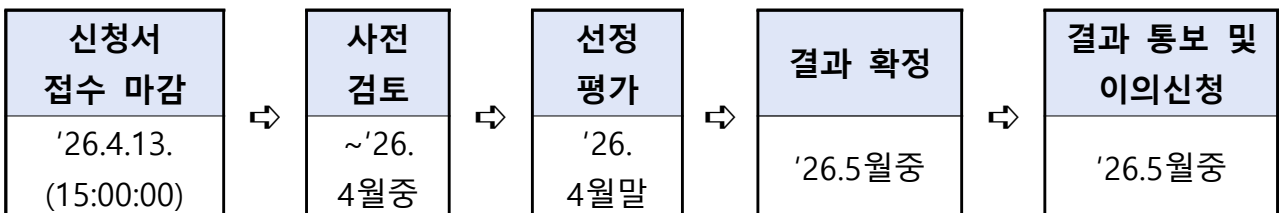
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 등

□ 평가 절차 및 방법

- 전문기관에서 참여 조건 등을 사전 검토하고,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층평가(발표평가)를 통해 국방부에서 최종 확정

평가 방법	평가 주체	주요 내용
① 사전검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신청 자격(신청 제외기준) 및 의무 사항 반영 등 과제 신청 적합 여부를 서류 검토를 통해 확인
↓		
② 선정 (발표)평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평가위원회)	· 총괄책임자 발표를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③ 결과 확정	국방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사업 심의위원회 또는 국방부 결과 확정 및 신청기관 통보
↓		
④ 이의신청	신청기관	· 평가 절차, 결과 등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평가 일정(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주요 평가항목	배점
수행계획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수행 목표의 명확성 및 도전성 과제수행 목표 및 방법의 창의성·혁신성 과제수행 추진계획의 구체성·적절성 	30점
기술개발·교육 운영·센터 운영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 AI 분야 신기술 및 군 소요 기술개발 추진계획 우수성 국방 AI 기술개발 부분 예산 편성의 적정성 국방데이터 안심존 운영계획 우수성 기술개발 실증환경 운영 및 관리 계획 우수성 군 AI 소요 기술개발 특화 PBL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계획 우수성 실습 교육 및 컨설팅 추진계획 우수성 AI 기업, 국방 관련 연구소 등과 협력한 국내 현장학습 및 세미나 운영 우수성 군·산·학 협력센터 운영계획 우수성 협업체 운영, 방산 생태계 지원 및 센터 보안관리 우수성 	20점
과제수행 역량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총괄책임자/연구팀 수행역량의 우수성 수행체계, 수행주체별 역할 등 추진체계의 적정성 군과의 과제수행 실적 등의 우수성 지자체와의 협업 능력 우수성 	20점
과제수행 성과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성과 자체평가 및 관리 계획 우수성 과제수행 결과의 학술적, 기술적, 경제적 우수성 과제수행 성과의 활용방안의 우수성 과제수행 성과의 방산 생태계 파급효과 우수성 	25점
예산 집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편성 적정성 <p>*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사업비 비중, 비목별 사업비 비중 등의 적절성</p>	5점

□ 평가 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형평가, 비대면 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수요기업이 포함된 신청과제는 수요기업의 성능평가·검증 수행 가능성 및 구매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해야 함
 - 수요기업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협약 시 연구개발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수요기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우선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과제의 경우, 해당과제에 대해 2주 연장 공고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최종 경쟁률이 1:1 이하의 응모 과제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과제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가점 사항

-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추가 해당사항을 포함해도 총 5점 이내 >
 - ※ 각 가점에 대한 관련 인증 확인서류 및 증빙서류 등은 전산접수 시 제출 必(미제출 시 불인정)
 -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임'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 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가 10% 이상인 경우(1점)
 - ※ 여성연구자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에 여성인력 식별이 가능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 ※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르며, 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여성인 경우로 한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가점대상으로 통보받은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영리기관이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평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최근 3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0.5점) 또는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현장 중심의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ICT R&D 혁신 클러스터 등 제3의 장소에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연구인력을 배치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1점)
 - ※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원배치 등 추진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한 경우
 - ※ 단, 일반적인 상호 방문 및 일시적인 연구활동은 제외되며 추진계획이 미흡한 경우 가점신청 내역이 미반영 될 수 있음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 고용노동부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23~25 선정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으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을 받은 자 가운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공시 시스템에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한 경우(0.5점)
 - ※ 정보보호 현황 공개확인(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security.or.kr) 접속 → "정보보호공시조회")
- 최근 3년 이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확인 받은 기술육성주체가 참여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1점)

□ 감점 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¹⁾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 선정 이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²⁾를 유지해야함
 - 1)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

10 사전지원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단, 기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확인근거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5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을 위해 제출한 서류 일체
----------------	--

- ※ 접수 마감일까지 '2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5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11

공통적용사항 및 동시 수행과제

공통사항

- 연구개발과제 상세 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 등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참조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 지원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 등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26년(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26.협약시~12월 등이고, 연구개발과제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심의위원회, 국방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평가기간 및 심의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은 변동 가능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이며 매년 국회 국가 R&D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 총 예산 등이 변동 가능
- (보안과제 분류) 지정공모/품목공모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하고, 자유공모 과제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제안자가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책임자 포함)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자문 등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한 사항을 선정된 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동시수행과제

- 동 사업은 연구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포함되나, 3책 5공은 해당 없음
 - * 다만, 연구책임자는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공통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이하,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영 제19조제1항제1호)	중견기업 (영 제19조제1항제2호)	공기업,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영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그 외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table border="1"> <tr> <td>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td> <td>75% 이내</td> </tr> <tr> <td>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이상</td> <td>70% 이내</td> </tr> </table>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	75% 이내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이상	70% 이내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2883, 2021.12.30.)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수요기업(해당 신청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장치·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신청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장치·서비스의 성능평가·검증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 공개소프트웨어 과제의 경우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비율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로 지원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및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영 제19조제1항제1호)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영 제19조제1항제2호)	공기업,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영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그 외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 현물은 소속기관 연구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부담할 수 있음
- *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 * 소재·부품·장비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함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할 것을 권고함
- *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 채용시점 기준)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9월 1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 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연구개발 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해야 함
-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의 ICT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연구개발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3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명				
채용 사례 2	2명			1명	
채용 사례 3	1명			1명	1명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9월 1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함 >

-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 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 접수마감일 전까지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유효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간 중 전문연구사업자로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인건비 현금 산정 불가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 접수마감일 전까지 창업기업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관리규정 [별표 3] ICT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본 연구과제 결과로 도출되는 연구성과물은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본 연구과제로부터 도출된 지적재산권 중 발명에 관하여 국가에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허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 자유공모 과제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지정공모/품목지정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연구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해당없음

□ 그 외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지침을 적용함
- AI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커리큘럼 및 교육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

ICT R&D 연구자간 시너지 향상과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①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에 최소 1회/연 참여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평가 운영을 위해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검토에 참여하신 연구자분들은 과제 기획위원 또는 정부정책 및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시 우선적으로 위촉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의거하여 수행 중인 연구과제 중단 여부 또는 목표변경 등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③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가 창출된 경우, 관련 성과물(논문, 특허, 표준화, 기술이전 등)을 부처(국방부) 및 IITP에 통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성과 홍보 시(각종 전시 참여·홍보 등) 다음의 사사(acknowledgement) 문구(안)를 포함하여야 하며, 언론 홍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IITP와 협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구 예시) ~~(중략) 0000 연구성과는 국방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0000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생략)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과 우리나라 ICT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신청방법 : IRIS 시스템을 통한 신청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IRIS 시스템을 통한 접수 전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을 확인 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접수 진행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內 신청·접수 과제 확인 방법

① 공고명 확인

- * 2026년 국방AI인재양성사업(군·산·학 협력센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②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공모방식) 확인

- * 국방AI인재양성 → 국방AI인재양성, 자유공모

③ 과제명 확인 후 해당 RFP에 접수

- * 군·산·학 협력센터(지역)

※ 직인/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 등록, 과제 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받음

□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공고 기간	전산(iris.go.kr) 등록 기간
2026. 3. 11.(수) ~ 2026. 4. 13.(월) 15시 까지	2026. 3. 30.(월) ~ 2026. 4. 13.(월) 15시 까지

※ 전산 등록·제출 마감시간(15시) 전까지(15:00:00) 반드시 신청 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전산 등록(온라인) 완료해야 함(마감 시간 이후 수정 및 전산 등록 불가)

* 마감 당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마감 하루 전 제출 완료 권장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 시스템에 등록 제출해야 함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사전지원제외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가 필요함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함
- 제출 서류(필수, 선택)는 접수 기간 내 전산 접수 등록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 내 전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 평가 없이 사전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할 수 있음
 - ※ 단, 적격성 검토 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외한 제출서류의 보완 및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필수, 선택)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는 필히 관련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명	제출 대상	필수 여부	제출 시점
1	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필수	신청시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제출	필수	
3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날장 제출	필수	
4	참여연구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의 책임자만 작성하여 제출 *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날장 제출	필수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분납 계획서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영리기관만 제출	필수	
6	회계감사 보고서 및 재무제표 (기타 증빙문서(해당 시))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영리기관만 제출	필수	
7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 신청기관만 제출	선택	
8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해당 시 필수)	해당 신청기관만 제출	해당 시 필수	

- 1,2,3,4,8번 제출 서류는 본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 6번 제출서류 설명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2024년, 2025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5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 202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5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 (기타 증빙 문서) 지원 대상 제외를 면하기 위해 증빙이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필요
 - * 사전 지원 대상 제외 기업이 아닌 경우 회계감사 보고서 및 재무제표만 제출
- 7번 우대사항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 단, 제출 증빙서류에 대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보완 등을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협약 시에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

사업설명회 개최

구분	내용
일시/장소	'26. 3. 25.(수) 10:00 ~ 11:30 /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청파로 464 3층)
주요내용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안내, 과제 설명 등

17 **문의처**

사업 관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방사업팀 이범진 수석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방사업팀 오서연 선임
042-612-8151, bjlee@iitp.kr	042-612-8154, sona7899@iitp.kr

전산등록(접수) 관련 : IRIS 콜센터(1877-2041)